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6/ 4/ 15 통권 177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경영판단 원칙
 - 이사 책임 면책과 절차적 정당성 실무 유의사항 (4)
- 폐업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 4월말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세요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세무조사 실시
- 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한 배당은 과세배당소득 아님 (p.12)

전직원 화합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용역해외수입의 부가세 대리납부와 국외용역대가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1.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지급 하면서 대가를 받은 해당 국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함
2. 대리납부의 성립요건
 - ① 용역의 성격 :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에 대해 세관에서 부가세 10%를 징수함에 상응하는 개념)
 - ② 공급자(용역 등 제공자)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등(해외 S/W회사, 현지 인플루언서)
 - ③ 공급받는 자(대가지급자) : 면세사업자(병원·학원), 비사업자(국가기관 비영리단체), 과세사업자 중 매입세액 불공제인 경우(접대비 관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등)
3. 대리납부 세액의 계산방법 : 대리납부세액 = 지급대가 보수·수수료 등×10%(총대가는 용역보수×110%임) (비용은 100이고 10은 선납매입세액으로 공제 차감됨)
4. 징수·신고·납부
 - 징수시점 : 국외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임
 - 납부기한 : 대가지급일 해당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임(과세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 3개월마다임)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5. 불이행시 가산세 : 미납가산세(과소납부액×3% + 미납일수별 0.022% 가산)
6. 용역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56조 적용 : 소득세율 22%(지방소득세 2%) 또는 내국인은 3.3%(과학기술, 경영관리전문 기술자의 지식·기능활용용역)
7. 실무 적용
 - ① 총지급액의 10%는 부가세 대리납부액으로 추가하며, 지급소득용역 총대가의 22%는 원천징수납부함
 - ② 국내 성형병원예 해외 환자를 모집알선해주는 해외인플루언서(유튜버 등)에게 대가 지급시 적용됨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75호 / 주간 15호

2026. 4. 15.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③ 즉답(010-2672-2250)
- ④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⑤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⑥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⑦ CEO·CFO 경영에세이
- ⑧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⑨ 세무·회계·재경고문
- ⑩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용역해외수입의 부가세 대리납부와 국외용역대가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표지
CEO의 경영산책	경영판단 원칙 - 이사 책임 면책과 절차적 정당성 실무 유의사항(4)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추계신고 후 장부기장으로 변경 신고는 수정신고도 아니며 감액경정청구 대상 아님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관련하여 - 기타소득 문의 -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5
눈에 맞는 절세미인	폐업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개요 - 고유가 시대 카드사별 주요 특화 카드 혜택	8 9
직장인Survival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10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직전 사업연도말(x1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해당 사업연도(x2년)에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830, 2025.06.26)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외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사전법규국조-106, 2025.06.11)	11 12
세정뉴스와해설	27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유튜브, 후원금 신고 안 하면 가산세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한 배당은 과세배당소득 아님	12
세무정보	-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 4월말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세요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세무조사 실시 - 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14 24 35 38 42
회계정보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7

경영판단 원칙

- 이사 책임 면책과 절차적 정당성 실무 유의사항(4)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이사의 책임 면책 여부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의결 과정의 정당성(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했는지에 의해 좌우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의결은 경영판단 원칙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반면, 절차가 부실하면 면책 효과가 부정되거나 약화된다. 경영판단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

-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성실하게 회사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 추구를 제한하는 법리이다.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이 경영상 결정을 내용 측면에서 재평가하기보다, 일정 범위 내에서 이사의 재량과 위험부담을 존중하는 기능을 한다.
- 절차적 정당성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이 적법한 소집·의사정족수, 이해상충 관리, 관련 자료의 수집 설명, 충분한 토론, 의사록 작성 등을 거쳤는지를 묻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특히 소수주주 이익, 이해상충 관계, 대규모 투자·M&A와 같이 위험과 이해충돌이 큰 안전일수록 이사회자료와 의사록에 검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의결 과정이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 구조

- 경영판단 원칙에 따른 면책은 ① 의식적 경영판단, ② 이해상충 부재, ③ 충분한 정보·검토 절차, ④ 내용의 현저한 불합리 부재라는 요건을 전제로 하며, 이 중 ③이 곧 “의결 과정의 정당성”으로 기능한다.

- 절차가 정당한 경우: 이사회가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받고, 실질적 토론·질의응답을 거쳐 결의했다면, 그 결정은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그 추정을 번복하지 못하면 이사는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사전자료 부족, 심의·토론 부재, 이해상충 통제 결여 등으로 의결 과정이 형식적에 그치면, 그 자체가 선관주의의무·감시의무 위반 사정으로 작용하여 경영판단 원칙의 보호가 배제된다.

개별 이사의 찬성·반대와 책임

- 우리 판례와 다수 견해는, 부당한 안건에 찬성한 이사는 그 의결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한다.
- 안건에 반대하거나 회의록에 반대·유보의견을 명시한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결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고, 절차상 적절히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이 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경영실무상 유의점

“의결 과정의 정당성 → 경영판단 원칙 적용 → 이사 책임 면책·제한”이라는 순서가 기본 구조이다. 절차가 흠결되면 첫 단계에서 경영판단 원칙이 멈추어 이사의 책임이 그대로 노출된다. 따라서 이사의 책임 면책 가능성은 의결 결과보다도, 정보수집·심의·이해상충 통제·기록 등 절차적 정당성을 얼마나 충실히 갖추었는지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문헌이 공통으로 확인하고 있다.

추계신고 후 장부기장으로 변경 신고는 수정신고도 아니며 감액경정청구 대상 아님

- Q**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무료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인 인플루언서에게 연락해서 제품 증정 후 홍보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일정 광고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보내면 인플루언서들이 홍보글을 올리고 그 글로 바이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목적으로 무상 증정하는 경우 하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과세 여부? (증정 물품 금액은 원가 기준 월 100~200만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원가, 시가 둘 중 회계 처리 여부 (원가 10,000원, 시가 33,000원(공급가 30,000, 부가세 3,000원) 인 경우)
- 예1) 광고선전비 13,000원/타계정대체(원가) 10,000,부가세예수금 3,000원
예2) 광고선전비 10,000원/타계정대체(원가) 10,000 (비과세인 경우)
- A**
1. 홍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제품 제공하는 경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용역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지출증빙임)
 2. 1안이 타당합니다.

종업원 할인금액(시가와 차액)은 근로소득 과세원칙

- Q** 종업원 복지혜택으로 무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는 할인이 아닌 무료이므로 무료숙박에 대하여서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또한 회사 내부에서 보상으로 제공한 당사 무료 투숙권에 대하여 종업원이 무료로 투숙한 경우/업무상 투숙하는 경우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
- 시가보다 할인받아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할인금액 중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세법개정안의 내용입니다.
- 귀사의 경우처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아직 구체적 범위 등이 나와있지 않지만 할인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시가와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한도내에서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 문의

- Q** 온라인 이벤트 상세 : 댓글 단 인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0명 뽑아 자사 제품 (5만원 이하)을 지급
기타소득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과 지급금액만 기재하였는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개정이 있어서 제출 의무가 있을지 어떤 법령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성실 가산세는 1% 가산세로 보면 될지도 알려주세요
- A**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제3호에 따라 건별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대상에 개인사업자 제외 =

- Q** 상증세 관련 예규(상속증여-382, 2013.7.22)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 즉,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경우, 수혜자가 법인이 아니므로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
- A**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귀사의 의견대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담실 백종훈 차장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영상의 이유로 여러 사업장이 통폐합되기도 하고, 지점사업장 등이 폐쇄되기도 하면서 사업장간 재고재화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동일 법인의 사업장간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모든 재화의 사용 및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시하지 않은 사업자의 잔존재화에 대해 재화의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도록 함으로써 그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켜 과세형평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업장폐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의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 확립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사업을 폐지하는 때란 폐업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라도 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는 경우, ②

동일 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던 자가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③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는 경우, ④ 미착재화,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은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장 통폐합 및 지점폐업을 하는 경우 지점 등에 보관하고 있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세법상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지점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지점의 재화를 본점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본점으로 이동된 뒤 판매·출고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고정자산의 경우 지점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종전 지점의 고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본점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으며 추후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7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 부가 46015 - 407, 2001. 2. 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개요

대상 자금	올해 해외주식 매각대금 중 국내주식 투자분
세제 혜택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5월까지 매도(100%), 6-7월(80%), 8-12월(50%)
계좌 한도	개인당 5000만원
혜택 제공 조건	해외주식 매도자금 결제 때 원화로 자동 환전
	납입일부터 1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
	1년 전 인출 땀 다시 세금 납부해야



분리과세 주요 상품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0만원 초과 분리과세(세율 9.9%)
공모인프라펀드	1억원 한도(15.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 배당증가율 요건 충족 주식 투자(15.4 ~ 33%)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시(9.9%)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2억원 한도(9.9%)



고유가 시대 카드사별 주유 특화 카드 혜택

KB국민카드	- 리터당 50원 할인(최대 150원 할인) - 주유 할인 혜택 담긴 카드 4종 발급고객(신규 및 휴면) 연회비 100% 환급 - KB국민 K-패스카드 이용 고객은 환급금의 30% 추가 지원(5월까지 5만명 추첨) - 주유 및 대중교통 업종 10만원 이상 이용 고객 중 총 2111명 추첨해 주유지원금 100만원(1명) · 50만원(10명) · 5만원(100명) · 5000원(2000명) 제공 예정
신한카드	- 주유 특화 카드 2종 신규 발급 후 10만원 이상 사용시 연회비 환급(1만2000~3만5000원) 5월 말까지 5만원 이상 주유 시 기존혜택이외에도 이용 금액의 3% 추가 캐시백(4월 · 5월 각각 1만원씩 총 2만원 수준 혜택)
NH농협카드	- 전국 농협주유소 이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5만원 이상 주유 시 리터당 200원의 캐시백 제공(10일까지, 농협 카드 이용 시) - 행사 기간 내 최대 1만원까지 캐시백(NH페이 이벤트 응모 후 결제시 혜택 적용) - 전월 실적에 따라 주유비 최대 15% 할인 혜택 제공
우리카드	주유 특화 신용카드 결제 시 리터당 50원 추가 할인, 또는 5% 캐시백 혜택 제공
롯데카드	주유 특화 카드 6종 연회비 환급(1만~3만원)
BC · 삼성 · 하나 · 현대카드 등	유류비나 교통비 절감 관련 프로모션을 자율적인 수준에서 검토 중



부동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률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 2,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 2,50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직장인의 하루는 늘 바쁘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일이 잘 굴러가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느냐’다.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 눈앞에 닥친 요청, 당장 답을 줘야 하는 메신저, 오늘 마감인 업무. 물론 틀린 선택은 아니다. 다만 이 방식에는 함정이 있다. 급한 일만 처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계속 뒤로 밀리게 된다.

여기서 기준이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최소한 두 가지를 함께 본다.

첫째, 이 일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둘째, 지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가.

이 두 기준을 교차해 보면 일이 네 가지로 나뉜다.

영향도도 크고 시급한 일은 당연히 최우선이다. 문제는 영향도는 크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이다. 많은 사람이 이 영역을 미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과를 만드는 건 대부분 이 영역이다. 기획, 개선, 관계 구축 같은 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시급하지만 영향도가 낮은 일은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다. 습관처럼 처리하던 보고, 불필요한 반복 업무,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요청들이다. 이 영역을 정리하는 순간,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확보된다.

결국 우선순위는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다.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정의하지 않으면, 타인의 요청이 내 하루를 설계하게 된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어봤다면, 한 번 더 질문해보자.

“이 일은 결과를 바꾸는 일인가, 아니면 단지 바쁘게 만드는 일인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의 밀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한 배당은
과세배당소득 아님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직전 사업연도말(×1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해당 사업연도(×2년)에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830, 2025.06.26

Ⅰ 질 의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발생한 자본준비금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혼재된 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Ⅱ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직전 사업연도말(×1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해당 사업연도(×2년)에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62, 2025.04.24

Ⅰ 질 의

-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및 선순위 상속주택(C)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Ⅱ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B)이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 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사전법규국조-106, 2025.06.11

Ⅰ 질 의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형태의 역내펀드를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국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 법인명세서 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Ⅱ 회 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407, 2025.06.12

Ⅰ 질 의

- 갑은 '24.xx~'24.xx까지 사업장 A에서 단독으로 음식점/피자전문점을 운영하다,
- 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4.xx~'24.xx까지 을과 공동사업 영위
- 이후 을은 갑의 지분을 모두 승계하여 '24.xx부터 사업장 A는 을의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됨

질의

- 거주자 갑 단독사업에서 갑과 을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거주자 을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Ⅱ 회 신

거주자 갑이 단독으로 사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 후 공동사업이 다시 거주자 을의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 갑과 을의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27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유틸버, 후원금 신고 안 하면 가산세

67.2만개의 법인은 27일까지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2만개)은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3%에서 4%로 올랐기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 법인에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한다. 26만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들은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 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실제 상황에 맞춰 예정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오는 7월 확정 신고 기간에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손택스 및 ARS 전화(국번없이 126, 1544-9944,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동전쟁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유가 민감 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산업대응지역에 위치한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연장을 허가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한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수출기업 등 세제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 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까지 지급한다.

유틸버 등은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취한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채널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중동발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2.6조원 투입... 정책금융, 자금경색 방지

정부는 3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6000억원을 사용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두 배 늘린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운임 단가 상승 및 운송 길이 막힌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 대상을 380개사 추가한다.

직접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는 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신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등에 306억원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부문에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기술컨설팅, 재직자 훈련에도 70억원을 들인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재생 에너지에 5000억원을 사용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원 늘린 1조1000억원으로 확대 운용한다.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에서 700개로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 규모가 4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신규 아파트 10만 가구에 배란다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하고 국립대와 부설학교 39개교에도 설치한다.

인공지능(AI) 분산형 전력망을 조성물량을 종전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려 차세대 전력망을 조기 구축한다.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전기화물차 보급 대수를 기존의 3만6000대에서 4만5000대까지 늘린다.

화석연료 절감을 위해 일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AI 전환(MAX)을 위해 2000억원을 신규 배치한다.

AI 등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위해 데이터 센터 실증, 인공지능이 가미돼 가동되는 스마트공장에 각각 140억원, 750억원을 사용한다.

조선, 철강, 자동차, 섬유, 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 명장들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제조공정 혁신을 추진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을 쓴다.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원을 받으려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으로써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보유해야 한다.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 국세청, 2026. 4

- 그간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소매·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약 124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 이번 4월 예정신고에도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① 예정신고 대상자 [67.2만 법인]

- 총 67.2만 개의 법인*은 '26. 1. 1. 부터 3. 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 신고대상: 전년 동기('25.1기 예정 65만 개) 대비 2.2만 개 증가
- 신고서는 홈(손)텍스 '미리채움'(총 25종)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텍스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6만 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 * 개별도움자료 제공현황: ('25.1기 예정) 69종 24.7만 개 → ('26.1기 예정) 76종 26.1만 개 법인
-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당부하였다.

경로

▶ (납 세 자) 홈텍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세무대리인) 홈텍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조회 → 신고도움 서비스

② 예정고지 대상자 [225.2만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207만 명)와 소규모 법인*(18.2만 개) 등 총 225.2만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25년 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26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및 세정지원 대상으로서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

○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 아니어도 홈(손)택스 뿐만아니라 ARS 전화*(☎126, ☎1544-9944, 세무서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법인은 보이는 ARS 간편인증(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을 통해서만 조회 가능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③ 적극적인 세정지원

□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먼저, ①유가 민감업종, ②수출 중소(중견)기업, ③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된다.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여주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주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5.12.) 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수)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④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브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하였다.(부가세법 §55①3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한 경우 채널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아울러,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되었다.(부가세법 §60④)

5 엄정한 신고검증

-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신고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니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받은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에게 당부하였다.

| 잘못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

- ① (중고플랫폼 매출누락)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누락한 사례
- ②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
- ③ (면세관련 매입)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신고편의 제고 및 맞춤형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사업자가 경영에만 전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신고도움자료 제공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이용시간: 4.1. ~ 4.27. 매일 06:00 ~ 24:00
손택스 (모바일)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6. 4. 27.(월) 18:00까지

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자료

□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업 종 별	건설	•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전기검사 자료, 산재보험가입자료 제공
	도소매	•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안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음식·숙박	• 배달앱 매출·숙박앱 자료, 의제매입세액 공제초과 안내
항 목 별	매출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캠핑카 제조·판매업 등 성실신고 안내
	매입	• 신용카드 사적사용 수취자료 안내(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
	공제	• 과·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안내

□ 홈택스 접근경로

- (납세자)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세무대리인)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과세기간 입력·수입납세자 조회



참고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및 납부 방법

1. 예정고지 조회 방법

- ①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조회 화면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 및 세액 확인
 - (고지대상) 홈택스 ID·PW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직접 조회
 - (고지세액) 홈택스 ID·PW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메뉴에서 직접 조회
- ② 홈택스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납부채납 > 고지내역 메뉴에서 조회
- ③ ARS(1544-9944)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세무서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
 - (개인) ☎1544-9944 →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 본인 확인(주민등록번호) → 이동통신사 본인 인증 후 이용 또는 국세상담센터·세무서 대표전화(보이는(디지털)·음성 ARS) →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세액 조회
 - (법인)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의 보이는 ARS 간편인증 후 조회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신용카드 0.7%(간이과세자는 0.4%), 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는 0.1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 (00:30~23:30, 07:00~23:30), 평일 (00:30~23:30, 09:00~23:30, 09:00~22:00)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3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원 이상 + 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 예정고지 제외 대상 확인방법

- (홈택스)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 가능
- (개별안내) 예정고지 제외대상 사업자에게 개별안내(모바일, 홈택스)

□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 ✓ [홈택스] ① 증명·등록·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 [손택스] ① 전체메뉴 →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우편·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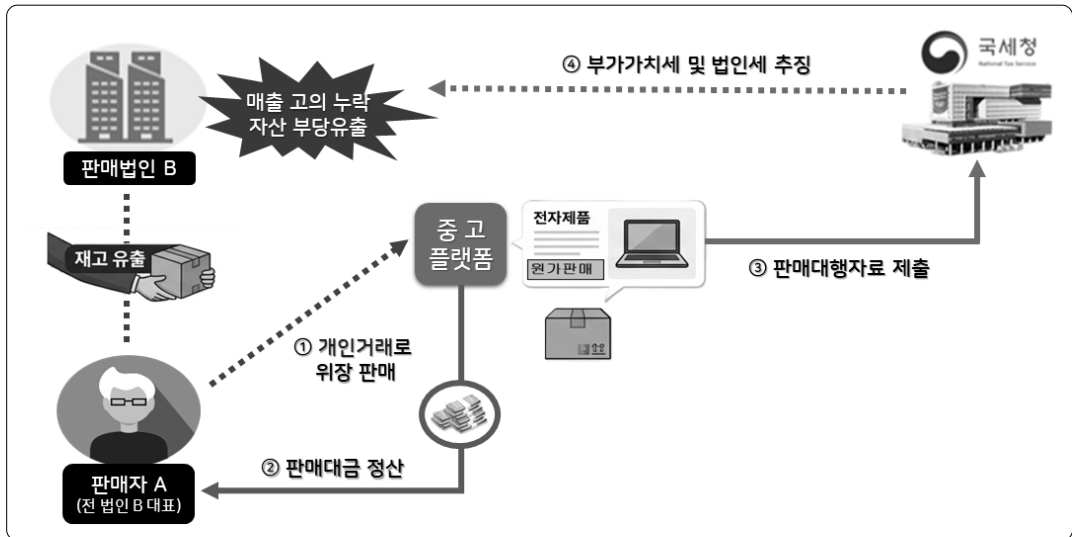


참고 4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정사례

사례 1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누락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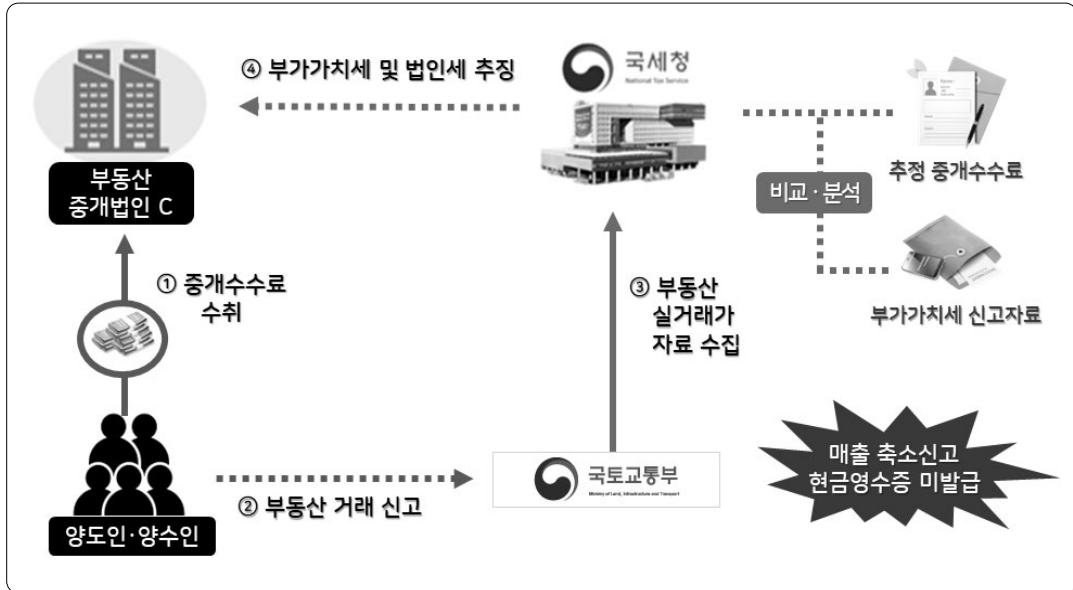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천 회에 걸쳐 00여억 원의 전자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한 A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함
-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 국내 판매법인 B의 대표자였던 판매자 A는 부당 유출한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로 위장하여 대량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제세 무신고함

□ 확인 결과 및 조치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한 거래상세내역*,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납세자 소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 * 거래일시·품목 및 안전결제(에스크로) 대금 정산 내역 등 플랫폼을 통한 거래증빙 일체
 - 재고자산의 부당 유출에 따른 귀속자 소득처분(상여), 신고 누락한 판매법인 B의 부가가치세·법인세 결정 및 가산세 추정

사례 2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고가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000억 원의 수수료 매출을 신고함
- 업종 특성상 현금·계좌 거래가 빈번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매출신고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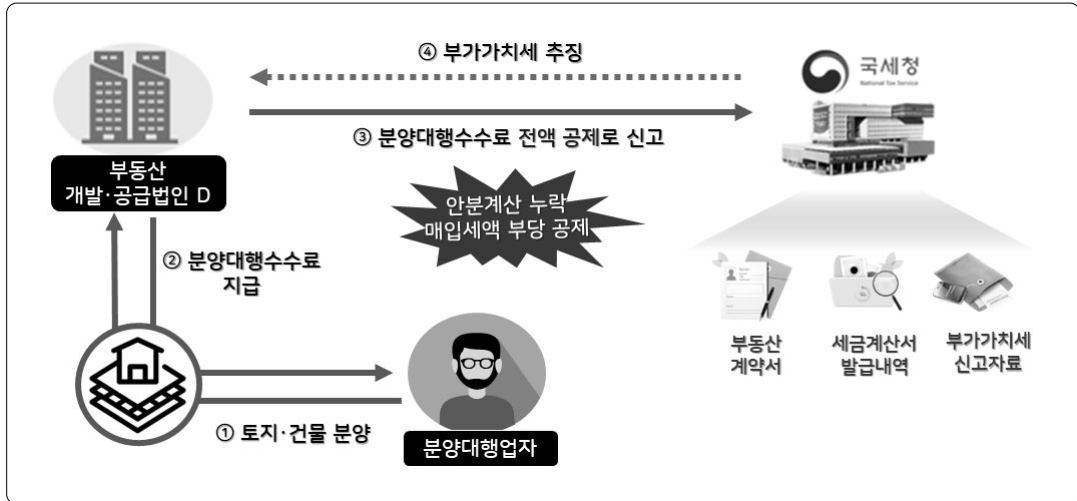
□ 확인 결과 및 조치

-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요율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추정
 - 부동산 중개법인 C의 추정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매출금액 과소신고가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인세 결정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추정



사례 3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부동산개발·공급업 영위 법인 D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함
-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토지 및 건물 계약금액에 따라 공동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실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함

□ 확인 결과

-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공급(건물·토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 소명내역을 확인한 결과,
 - 부동산개발·공급업 법인 D는 분양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다 공제 매입세액 및 가산세 추징

참고 5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No	구분	예정신고기간 제공 항목(총 25종)	제공일정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6.4.1.
2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6.4.11.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6.4.14.
4		신용카드 매출	26.4.15.
5		판매·결제대행자료	26.4.16.
6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6.4.15.
7		면세수입금액	26.4.14.
8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6.4.1.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6.4.1.
10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6.4.15.
11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6.4.14.
12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6.4.14.
13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6.4.14.
14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6.4.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6.4.1.
16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6.4.11.
1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6.4.14.
18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6.4.14.
19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6.4.1.
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6.4.14.
21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6.4.14.
22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6.4.14.
23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6.4.14.
24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6.4.14.
25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 후

4월말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 국세청, 2026. 4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기부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편하고 쉽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지속하여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익법인 신고의무 >

- ◆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제외)은 재무제표(주식포함)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
 - *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 간편공시 대상도 미공시 또는 오류 공시의 경우 가산세 부과
- ◆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 ◆ (의무이행 보고 및 수입명세서 제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
 - *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제외

<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주요 신고의무 >

구분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제출
공익법인	○	○	○	×
공익단체	○	○	×	○

* 간편공시 대상은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표준공시 대상은 면제)

① 12월말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목)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 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각종 신고서류(총 5종*)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①결산공시, ②출연재산 보고, ③의무이행 보고, ④수입명세서, ⑤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의무위반이 빈번한 항목에 대한 법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안내하고,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 법인카드 사적사용, 특수관계인 부당채용, 특수관계이사 1/5초과, 출연 부동산 3년 내 공익 목적 미사용 등 위반 혐의 항목에 대해 개별법인에 맞춤형 안내

< 주요 신고지원 내용 >

- ◆ (신고 편의제공) 각종 신고의무 이행 과정에서 작성이 어려운 항목은 홈택스 화면에 코치마크*(Coach Marks)를 도입하여 편의를 제공
 - * 홈택스 신고 시 반투명으로 화면을 덮어 버튼이나 메뉴에 대한 도움말 제공
- ◆ (찾아가는 상담) 세무역량이 부족한 영세공익법인은 직접 방문하거나 원격지원을 통해 신고 상담 및 도움서비스를 제공
- ◆ (체험형 교육) 공익법인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체험형」 신고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애로를 해소

- 금년부터는 결산서류를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손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익법인의 공시자료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되어 공시 오류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홈택스 검색창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검색(로그인 필요 없음)

<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 >

개선 사항	개선 효과
❶ 수정 전·후 서식 간 병렬 비교 기능 제공	• 공시 차수별 변동 내역을 직접 비교할 수 있어, 변동 이력에 따른 수정사항을 손쉽게 파악 가능
❷ 재공시 수정항목 적서 표기	• 전체 결산서류(총 6가지 서식)를 검토하지 않고도, 최신 수정 항목을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



② '25년 검증 결과,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은 지난해 회계부정 및 사적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검증 결과, 303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증여세 등 198억 원 추징)하였습니다.

<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

◆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

- ❶ 공익법인 이사장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 등을 대납
- ❷ 이사장의 사고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이사장 일가가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 시 법인 신용카드로 사적 사용

◆ 공익자금 부당 거래 등 의무 위반

- ❶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급
- ❷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현금화하여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 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고, 특수관계인이 이를 재위탁하여 실제 관리 없이 운영수익의 차액만을 취득

- 향후에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또한,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공시자료와 신고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③ 국세청은 투명한 공익법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는 국민들이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히 신고하여 국민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도 공익법인이 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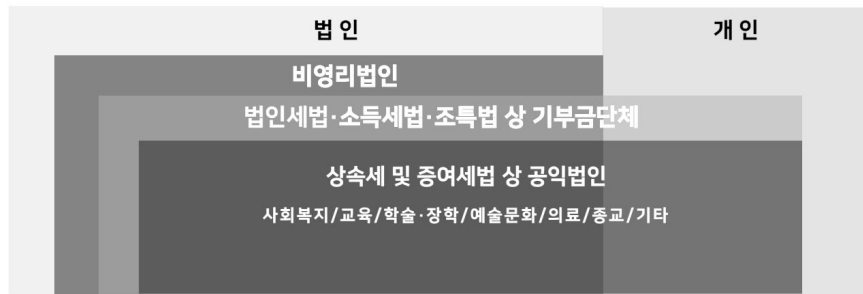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당한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국민 신뢰를 받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공정한 사회, 따뜻한 나눔”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참고 1 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

□ 공익법인이란

-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

- | | | | |
|--------------------------------|----------|-------------------|--------|
| ① 종교단체 | ② 학교·유치원 | ③ 사회복지법인 | ④ 의료법인 |
| ⑤ 특례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 ⑥ 일반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 |
| ⑦ 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 | |



공익법인 현황 약 4만 여개(2025.12.31.)

※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 | |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 |
| • 공원묘원, 납골당 | |

□ 세제혜택

- (상속세 및 증여세)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해 면세함
- (법인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함



- (소득세) 공익법인에게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참고 2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사항
■ 출연재산(기부금, 부동산, 주식 등)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증여세 부과
■ 출연재산(부동산, 주식 등) 매각대금 출연재산을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증여세 부과
■ 출연재산 운용소득(이자, 임대료, 배당금 등)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증여세 부과 • 가산세 10% 부과
■ 수익용 출연재산 의무사용 ①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출연재산 합계액 3억원 이상, ②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5% 등 초과보유하는 경우 ⇒ 매년 수익(사업)용 재산의 1%* 상당액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 보유시 3%	• 가산세 10% 부과 • 가산세 200%* 부과 * 주식 5% 등 초과 공익법인
■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 가산세 부과
■ 자기내부거래 금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수익 금지	• 증여세 부과
■ 주식의 출연·취득·보유 제한 등 ① 동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10%, 2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 상증법 §48 ⑪요건 충족시 10%, 의결권 미행사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법인 20% ②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 50%	① 증여세 부과 ② 가산세 5% 부과
■ 기타 의무사항 ①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②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제공 금지 ③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① 가산세 부과 ② 증여세 부과 ③ 증여세 부과

참고 3 공익법인 주요 신고·제출 의무

대상법인	주요 신고·제출 의무 (12월말 결산 법인 기준)
소규모 공익법인 (자산 5억 미만 & 수입금액+출연재 산 3억 미만) ① ~ ⑤	①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 기부금 등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매각대금·운용소득 사용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다음연도 4월까지) ②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함(다음연도 4월까지) ⇒ 소규모 공익법인은 첨부서류 없이 간편하게 공시 가능 ③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전용계좌 개설·사용, 홈페이지 개설,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다음연도 4월까지) ④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공익목적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금융계좌(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기한 내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함 - 개설신고 기한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변경·추가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⑤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 등 의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등의 의무가 있음 (다음연도 6월까지)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의무 면제
중규모 공익법인 (자산 5-100억 or 수입금액 +출연재산 3-50억) ① ~ ⑥	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부터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 출연재산 보고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다음연도 4월까지)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
대규모 공익법인 (자산 100억 이상 or 수입금액 +출연재산 50억 이상 or 출연재산 20억 이상) ① ~ ⑧	⑦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의무 - 직전연도 ①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②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③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은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다음연도 4월까지) ⑧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의무 - 총자산가액 1천억 이상인 공익법인은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연속하는 2개 연도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감사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참고 4

공익법인 신고실무 세법교실

신고 전 홈택스를 통한 공시서류 작성방법 실습을 통해 공익법인 실무자가 쉽게 신고하고, 공시요류 발생을 축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대면으로 세법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 개요

- (교육대상)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하여 신청한 공익법인 실무자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본청) 및 대면교육(각 지방청) 병행
 - * 전년 교육(대면교육 7회, 온라인 교육 3회) 대비 8회 ↑
- (교육내용)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사례를 활용한 홈택스에서 출연재산보고서·결산서류 공시서류 작성

< 교육 시간표 >

시 간	내 용
10:00 ~ 10:50	① 납세의무 개요
11:00 ~ 12:00	② 출연재산보고서 작성하기
12:00 ~ 13:00	점 심 시 간
13:00 ~ 13:50	③ 결산서류 공시 작성하기
14:00 ~ 14:50	④ 통합신고 작성하기
15:00 ~ 15:50	⑤ 주식작성하기

□ 교육 장소 및 일정

- (온라인교육) 중부청 전산교육장 (강사: 본청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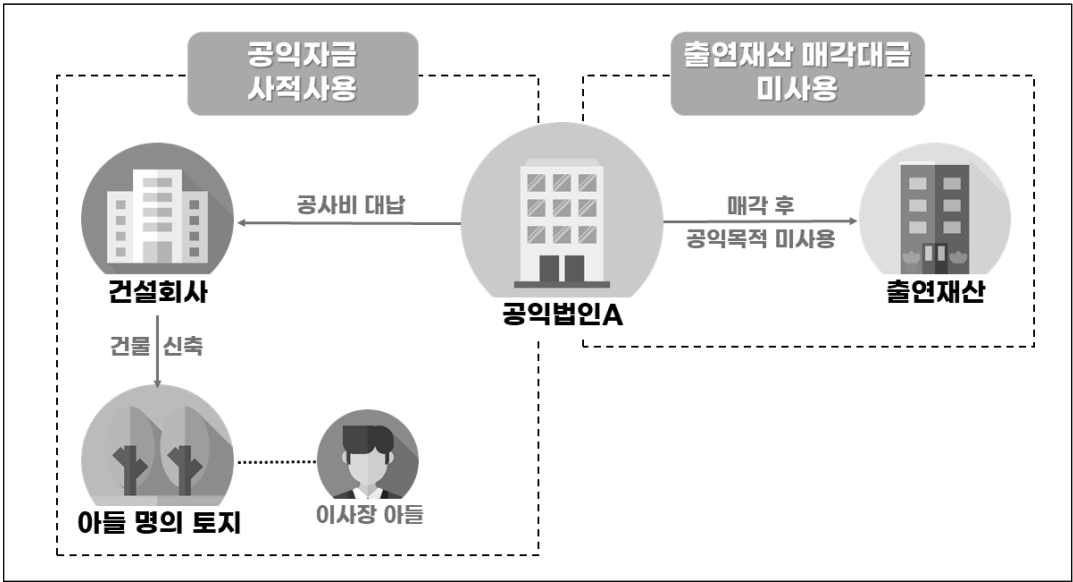
일 시	4.1.(수) / 4.2.(목) / 4.8.(수) / 4.9.(목)	4월 첫째, 둘째주 수·목
인 원	각 300명~350명	

- (대면교육) 각 지방청 전산교육장 (강사: 각 지방청 담당)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부산청	인천청
일 시	4.7.(화)	4.3.(금)	4.7.(화)	4.3.(금)	4.8.(수)	4.13.(월)	4.7.(화)
	4.9.(목)	4.7.(화)	4.14.(화)	4.10.(금)	4.9.(목)	4.14.(화)	4.8.(수)
인 원 (540명)	각40명	각40명	각40명	각40명	각40명	각40명	각30명

참고 5 **공익법인 사후검증 주요 추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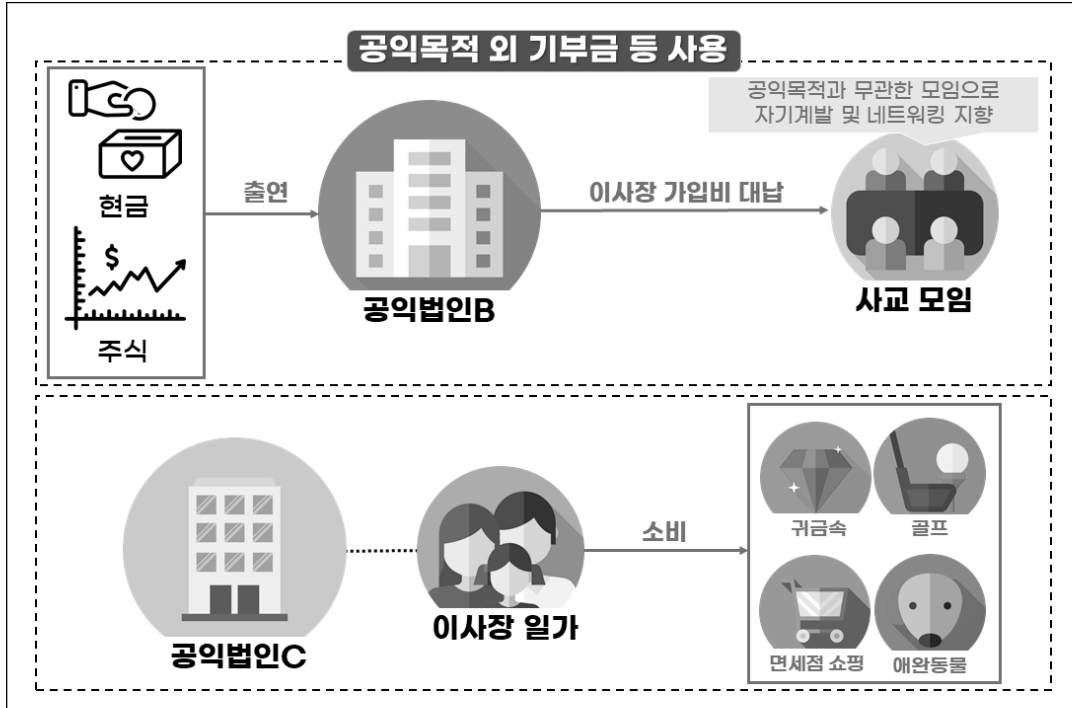
사례 1	이사장 자녀 명의의 건물 신축공사 비용 대납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공익자금 사적사용	



- 주요혐의
- 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당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
 - 또한, 과거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하나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 조치사항
- 공익목적 외로 사용한 대납한 공사대금 및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0억원) 추정



사례 2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를 공익자금으로 대납
공익자금 사적사용	이사장 일가가 법인 신용카드로 공익자금 사적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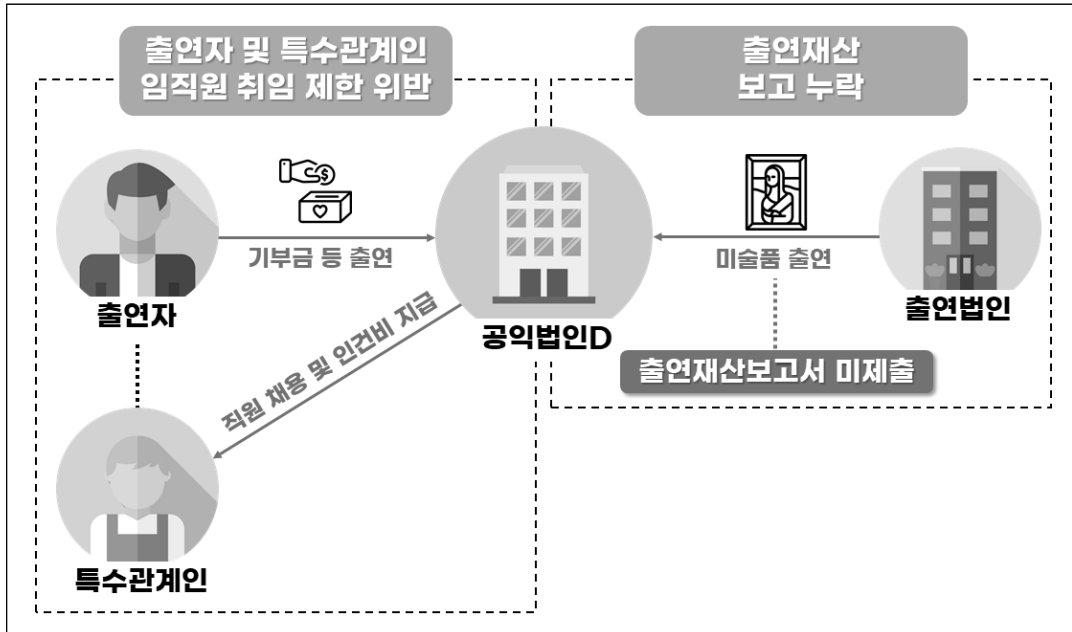
□ 주요혐의

- 공익법인 B는 공익목적보다는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의 수백만원 상당 가입비를 이사장 사비 대신 기부금 등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
- 공익법인 C의 이사장 일가는 지난 5년간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관련 및 피부 미용점에서 약 0억원 가량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 조치사항

- 공익법인 B가 대납한 해당 모임의 가입비에 대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0백만원) 추정
- 공익법인 C의 이사장 일가가 법인 신용카드로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추정(총 000백만원)

사례 3 특수관계인 고용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 및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누락
---	--



□ 주요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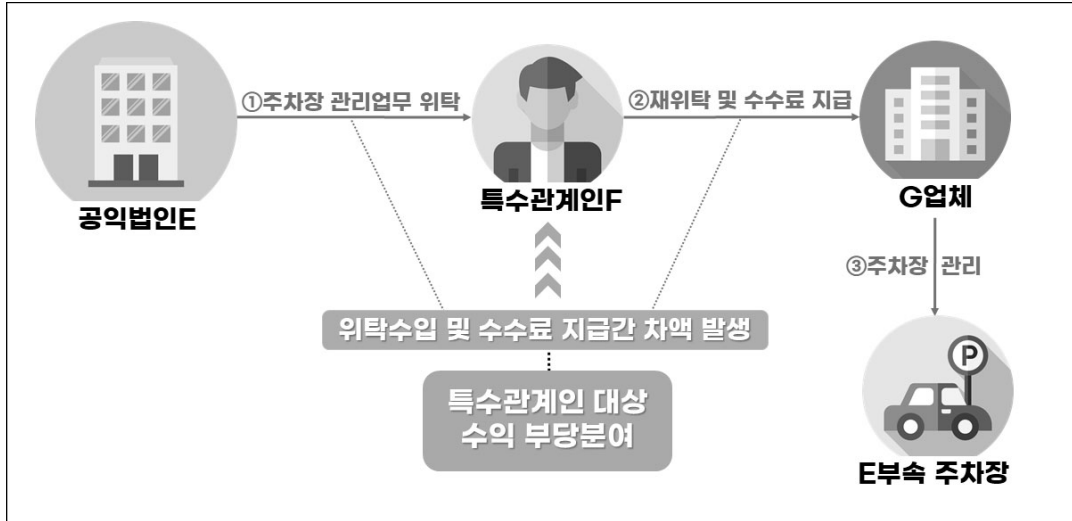
-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급여, 차량 유지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직·간접경비 상당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임
 - 공익법인 D는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의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00백만원) 지급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상증령§41) 하여야 하지만, 출연받은 미술품을 신고하지 않음

□ 조치사항

- 공익법인 D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액 상당의 증여세,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따른 가산세 추징(총 00백만원)



사례 4	
특수관계인 수익분여	주차장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차익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



□ 주요협의를

- 공익법인 E는 특수관계인 F에게 공익법인 소유의 건물 부설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하고,
 - 특수관계인 F는 G업체에 주차장 관리를 재위탁하여 G업체가 특수관계인 F를 대신하여 주차장을 실제로 관리하게 함
- 주차장 관리 명목으로 특수관계인 F에게 발생한 수입과 특수관계인 F가 G업체에 지급한 용역수수료의 차액은 공익법인 E가 특수관계인 F에게 분여한 협의가 있음

□ 조치사항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법인세(000백만원) 추징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행정안전부, 2026. 4

<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세정지원 사항 >

❶ 수출 및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4.30. → 7.31.)

- ▶ (수출) '24년 대비 '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 ▶ (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 ▶ (위기지역)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 포항, 울산 남구 등) 소재 중소·중견기업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약 10만 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됨

❷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및 재해 손실 기업 등에 대한 기한 연장 신청 가능

- ▶ (적용대상) 재해·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기업
 - 올해는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 포함
- ▶ (적용내용) 피해 입증 서류와 함께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시 최대 1년 (6개월+6개월) 납부기한 연장 지원
- ▶ (신청방법)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연장 신청 가능

❸ 세액 분할납부 가능

- ▶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할납부 가능

구 분	내 용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시기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6. 1. 까지)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6. 30. 까지)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들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 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 역시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하여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 당장 목돈을 내기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해 분할 납부 제도도 적극 안내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기한을 나누어 세금을 낼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50%) 이하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면 된다.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규모 비율(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 $$\text{안분율} = \left(\frac{\text{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 \frac{\text{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신고가 물리는 기간에 위택스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해 별도의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며, 위택스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및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세정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자가 아무런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4월 3일 (금)	4월 6일 (월)	4월 7일 (화)	4월 8일 (수)	4월 9일 (목)
미 달 러 (USD)	1518.80	1507.60	1507.20	1506.80	1476.10
일 본 엔 (JPY)	952.11	944.23	944.01	948.60	930.88
영 국 파 운 드 (GBP)	2008.92	1998.52	1994.70	2015.12	1977.83
캐 나 다 달 러 (CAD)	1091.21	1081.07	1083.50	1087.35	1066.01
홍 콩 달 러 (HKD)	193.78	192.35	192.31	192.29	188.48
위 안 화 (CNH)	220.93	219.26	219.11	219.25	216.32
유 로 화 (EUR)	1752.85	1735.70	1739.84	1757.68	1721.58
호 주 달 러 (AUD)	1049.72	1038.43	1042.53	1063.12	1040.21
싱 가 폴 달 러 (SGD)	1181.58	1171.18	1172.96	1178.89	1158.32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76.03	374.00	374.23	373.80	37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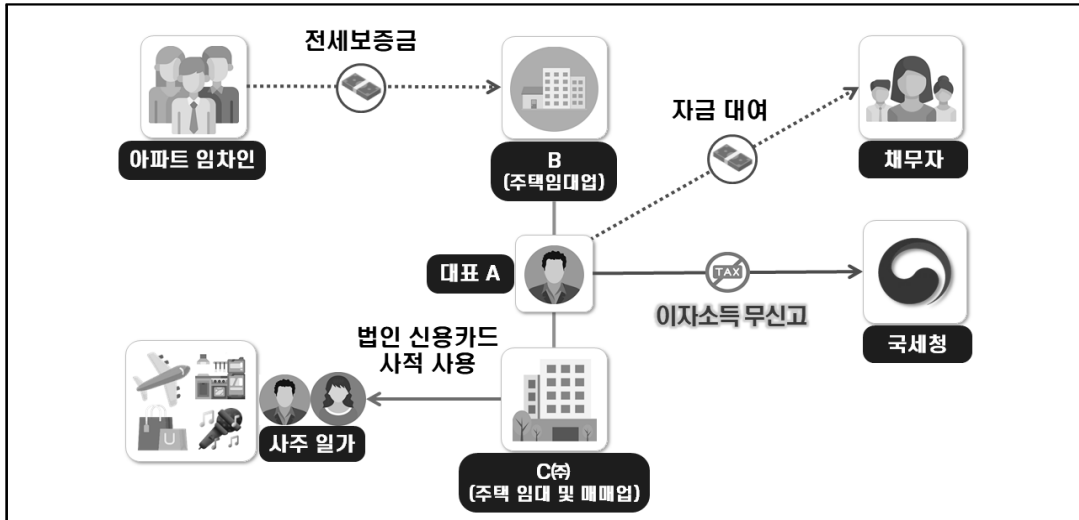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2026. 4

-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혜택으로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조사대상자는 ❶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❷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❸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개로,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천 8백억 원에 이릅니다.
 - 특히,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주요 조사 착수사례
-----------	-------------------

사례 1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	전세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며 이자소득 무신고, 사주 일가 사적경비 및 중복 수선비를 법인 비용 처리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업자
-------------------------------------	--



□ 주요 탈루혐의

- 주택임대 업체 B를 운영 중인 A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와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하며 임대
 - A는 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관련 이자소득 0억 원을 무신고
- A는 주택 임대 및 매매업 법인 C(주)를 설립하여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 명품 구입비 등 사적경비 0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신고
 - 또한, 취득원가로 신고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수선비로도 중복 처리하여 비용 0억 원을 과다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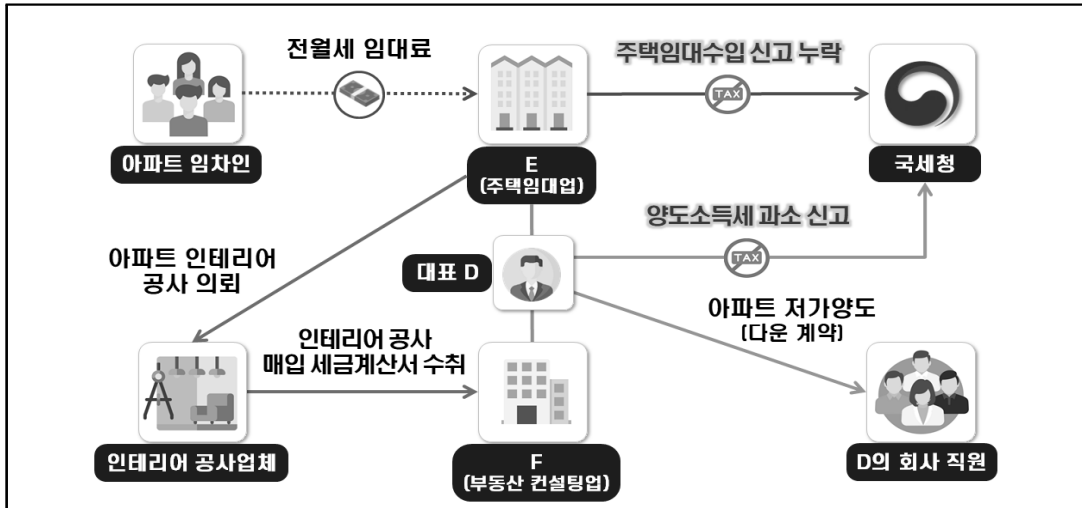
□ 조사방향

- 주택임대수입으로 자금 대여 행위를 하며 이자소득 신고 누락한 A와 사주 일가 사적경비 및 수선비를 부당·과다 신고한 법인 C(주)에 대해 엄정 조사



사례2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임대]

주택임대수입 누락,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타 사업장 매입으로
부당 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한 아파트 100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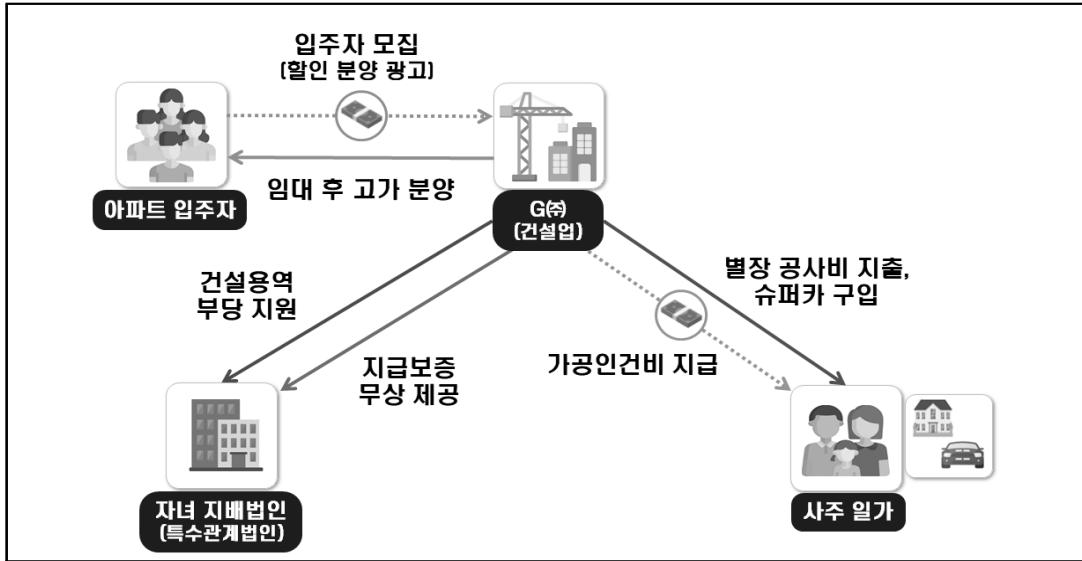
- D는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하며 주택임대 업체 E를 운영
 - 임대업자 D는 거래 상대방인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 40여 호에 대한 임대수입 0억 원을 신고 누락
 - 또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00억 원을 D가 운영 중인 타 사업장 F(부동산 컨설팅업) 명의로 수취 및 F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
- D는 보유 아파트를 본인의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며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00억 원 과소 신고

□ 조사방향

- 주택임대수입 누락, 임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타 사업장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한 주택임대업자 D에 대해 철저히 조사

사례3
[허위 광고로
아파트 고가 분양]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 모집, 임대 후 고가 분양하고, 임대 및
분양 수익을 유용하여 자녀 법인 및 사주 일가에 부담 지원한 아파
트 건설업체**



□ 주요 탈루혐의

- 아파트 건설업체 G(주)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하여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였으나, 실제로는 할인 없이 고가 분양
 - G(주)는 특수관계법인인 자녀 지배법인에 건설용역 00억 원 부담 지원하고, 지급보증을 무상 제공하며 수수료 000억 원 미수취
 -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00억 원, 슈퍼카 0대 구입비 00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 일가에 가공 급여 0억 원을 지급하며 인건비로 신고

□ 조사방향

- ‘할인 분양’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하고, 임대 및 분양 수익을 유용하여 자녀 법인 및 사주 일가에 부담 지원한 G(주)에 대해 철저히 검증

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6. 4

1 추진배경

- 최근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여 주택을 편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 취득에 유용하여 대출규제를 회피하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여억 원에 취득하면서 ○○억 원의 사업자 대출금과 ○○억 원의 신고누락된 탈루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년간 ○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 계상하여 탈세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

-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자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하고,
 -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 주택 취득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그 외 편법 증

- 여받은 사실은 없는지 자금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대출이자 관련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소득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한편,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대출금은 상환 시까지 경비를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부모 등이 대신 상환한 것은 아닌지 탈루여부를 사후관리하겠습니다.

3 당부 말씀 및 향후 계획

-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해 주택 취득분을 포함하여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할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일반적인 경우 다음해 5월말,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말

- 다만, 전수 검증에 앞서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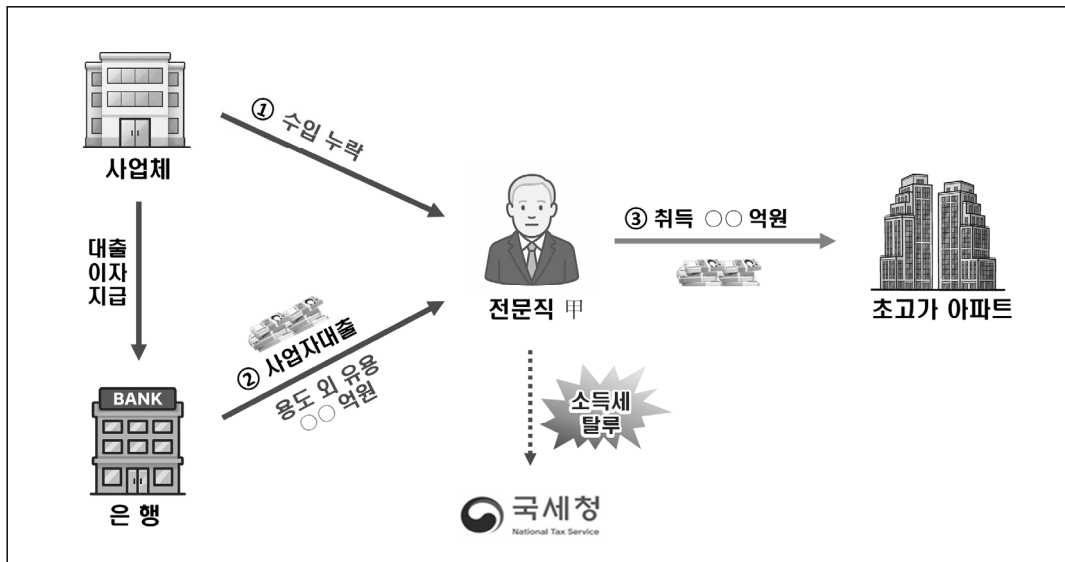
|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기간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 1년 이내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1년 초과 ~ 2년 이내
감면율	90%	75%	50%	30%	20%	10%

- 이번이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불임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탈루사례

사례 사업자 대출과 수입금액 누락한 자금으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 주요 조사내용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甲은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〇〇억 원에 취득하고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함
- 甲은 주택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소득 등이 부족하여 조사 선정함
 - 조사 결과, 甲은 사업자 대출 〇〇억 원을 용도 외 유용하고 관련 이자비용 〇억 원을 경비로 부당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〇〇억 원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함

□ 조치사항

- 부당 계상한 이자비용과 수입금액 누락 금액에 대해 소득세 〇억 원 추징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 금융감독원, 2026. 4

- 주요 내용 -

◆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 (개요)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 '25년 중 31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

√ (대상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①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기한)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위반시 제재)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

◆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2월 결산법인은 9.14.까지).

√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
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
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



1

제도내용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23④)

* ①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 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목적)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주기적 지정제도 개요

- ◇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택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26년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사 주기적 지정 일정(안)

정기총회 +14일	'26.9.1.	'26.9.14.	'26.10.15.	'26.10.29.	'26.11.12.
소유주식현황 자료제출 (회사)	지정대상 선정일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	지정감사인 본통지 (금감원)

- (제출기한)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방식)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

- (제출인) 회사가 직접 제출(☞ 참고 “제출방법 안내”)
□ (제출서류) ① 공문, ②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③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④ 법인등기부등본
□ (안내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 ⇒ [외부감사 업무자료·FAQ]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6년)” 참조

- (위반시 제재) 자료 미제출 등 위반사유 발생시 증선위는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29①제2호)

2 유의사항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
- ②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26.9.14.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12월 결산법인: 9.14.까지)해야 하며,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 필요 (외감규정 §15③)

소유·경영 미분리 판단 사례

- ① (지배주주가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② (지배주주가 법인 ①)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③ (지배주주가 법인 ②)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함

3 향후 계획

- 대형비상장사가 외감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

※ ① 홈페이지 문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질의회신 및 Q&A신청” 클릭하여 Q&A 통해 질의

② 전화 문의 : (02) 3145-7761 / 7975



참 고

제출방법 안내

1

첨부서류

1. 신고서 제출 공문(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및 직전 전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 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포함)

*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24.1.1

2.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

제출 방법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332(이후 ⑤→①→①)

-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을 클릭

-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등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 → “외부감사 업무자료·FAQ”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6년)” 자료참고

-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

*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내용으로 처리)